

# 인천광역시 강화군

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## 군 보

제1422호

2026년 7월 10일(금)

### - 차 례 -

#### 입법예고

- 제2026-1088호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 1
- 제2026-1090호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 8

#### 공고

- 제2026-1069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- 16
- 제2026-1076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(안) 재공고열람 - 19
- 제2026-1083호 국화1·2·3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일정 및 참관요청 반송에 따른 - 22  
공시송달 공고

## 입법예고

강화군 공고 제2026-1088호

##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7월 10일

### 강 화 군 수

#### 1. 조 례 명: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#### 2. 개정이유

- 가. 현행 위원장 단독 체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, 행정과 민간이 함께 위원회를 이끄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정함으로써, 민관협치 기반 마련
- 나. 위원의 임기 연장 및 위원 수 증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 및 위원 수 증원(안 제3조제1항)
- 나. 당연직 위원 정비(안 제3조제1항제1호)
- 다. 위원 임기 연장(안 제4조)
- 라. 포상근거 신설(안 제11조)

4. 입법예고 기간: 2026. 7. 10. ~ 7. 30.

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수(감사법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
자치법규안	찬·반 여부 및 사유
	- 구체적으로 기술 -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

-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기타 참고사항 등

6. 행정규제 사전심사 결과: 규제없음

7. 공청회 개최계획: “없음”

< 의견 제출 및 문의처 >

- 주소: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, 강화군청 기획예산과

- 전화: 032-930-3311

- 팩스: 032-930-3631

- 전자우편: sudagul@korea.kr

강화군 조례 제 호

##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장 1명”을 “공동위원장 2명”으로, “100명”을 “20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은 군수”를 “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”로, “부위원장”을 “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기획예산과장, 총무과장”을 “인구증대담당관, 기획예산과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위원장의 직무)”를 “(공동위원장의 직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이 부득이한”을 “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”으로, “위원장이 지명한”을 “공동위원장이 미리 정한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공동위원장은 서로 협의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위원장”을 “공동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20명”을 “25명”으로, “호선한다”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공동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1조) 중 “위원장”을 “공동위원장”으로 하며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포상)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군민 소통·통합 정책 발전에 기여

한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「강화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<u>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10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<u>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u>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: 행정국장, 문화복지국장, 경제산업국장, 안전건설국장, <u>기획예산과장, 총무과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<u>공동위원장 2명</u>-----  <u>200명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.</p> <p>② ----- <u>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 <u>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</u>---.</p> <p>③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1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인구증대담당관, 기획예산과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위원의 임기) 공무원이 아닌 <u>위원의 임기는 1년</u>으로 한다.다만,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위원의 임기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2년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(생략)

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(생략)

④ (생략)

제8조(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

②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(생략)

④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

제6조(공동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-----  
-----.

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-----  
공동위원장이 미리 정한 -----  
-----.

제7조(회의) ① 공동위원장은 서로 협의하여 -----  
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.

1. 공동위원장 -----  
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25명 -----  
-----  
-----  
---- 호선(互選)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-----  
----- 공동위원장-----  
----

제11조(포상)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군민 소통·통합 정책 발전에 기여한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「강화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공동위원장-----.

강화군 공고 제2026-1090호

**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**

「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,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7월 10일

강 화 군 수

1. 개정 조례명 :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

2. 개정이유

- 가. 강화나들길 코스를 정비하고 강화나들길 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나들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및 불명확한 표현 현행화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 변경
  - (당초)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
  - (변경) 강화군 강화나들길 관리운영 조례
- 나. 강화나들길 코스 정비(제4조)
  - 강화나들길 코스 정비(변경 1개, 해제 6개)
  - ‘별지’를 ‘별표’로 정비하고, 코스 현황을 명확히 규정
- 다. 강화나들길 관리위원회 비상설화(제7조~제12조)
  - 강화나들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문 기능은 유지하되, 상시 위원회 운

- 영 방식에서 안전 발생 시 구성·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 방식으로 전환
- 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(제1조~6조, 13조~14조)
  -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여 문장 구조를 간결하게 정리

4. 입법예고 기간

○ 2026. 7. 10.(금) ~ 2026. 7. 30.(목)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30일까지 강화군수(관광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
조례 개정안	찬·반 여부 및 사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체적으로 기술</li> <li>-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</li> </ul>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팩스

- 1) 주 소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(강화군청 관광과)
- 2) 팩 스: 032-930-3611

라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관광과(☎032-930-356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6. 행정규제 사전심사 결과: 규제 없음

7. 공청회 개최계획 : 개최계획 없음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건	비 고

강화군 조례 제 호

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강화군 강화나들길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화나들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 도보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강화나들길(이하 “나들길”이라 한다)이란 강화의 자연·생태·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강화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조성·지정하여 관리하는 자연친화적인 길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강화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나들길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강화군이 조성·지정하여 관리하는 강화나들길에 적용하며, 코스별 나들길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(종합관리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나들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강화군 나들길 종합관리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나들길 관리 및 운영의 기본방향

2. 나들길 이용자의 안전대책

3. 나들길의 환경보전 및 정비 방안

4. 나들길의 활용 방안

5. 그 밖에 나들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코스의 변경 등) 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,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를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나들길 코스의 명칭·구간을 변경하거나 코스를 해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나들길 코스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군수는 나들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관련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나들길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

2. 나들길 코스의 지정·변경·해제

3. 나들길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

4. 그 밖에 군수가 나들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, 해당 안전의 자문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
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나들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역사, 문화, 관광 또는 생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나들길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.

제12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관리체계) ① 나들길 업무 담당 부서장은 나들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나들길이 소재한 읍·면장은 편의시설 점검, 환경정비, 민원사항 확인 등 코스별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위탁 등) ① 군수는 나들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나들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나들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, 수탁자 선정, 관리·감독 등에 관하여는 「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강화나들길 코스(제4조 관련)

구 분	코 스 명	거 리	소요시간	코 스(시점-종점)
1코스	심도역사 문화길	18.0km	6시간	강화버스터미널 - 갑곶돈대
2코스	호국돈대길	17.0km	5시간 50분	갑곶돈대 - 초지진
3코스	고려왕릉 가는 길	16.2km	5시간 30분	온수공영주차장 - 가릉
4코스	해가 지는 마을길	11.5km	3시간 30분	가릉 - 망양돈대
5코스	고비고개길	20.2km	6시간 40분	강화버스터미널 - 외포여객터미널
6코스	화남생가 가는 길	18.8km	6시간	강화버스터미널 - 광성보
7코스	고인돌 탐방길	12.0km	4시간 20분	강화지석묘 - 오상리고인돌
8코스	철새 보러 가는 길	11.2km	3시간 30분	초지진 - 선두4리 어판장
9코스	다음새길	16.0km	5시간	월선포선착장 - 화개산 - 월선포선착장
10코스	서해 황금들녘길	13.5km	4시간	창후선착장 - 외포리여객터미널
11코스	석모도 바람길	16.0km	5시간	나룻부리항시장 - 보문사 주차장
12코스	주문도길	11.3km	3시간	주문도선착장 - 주문도선착장
13코스	불음도길	13.6km	4시간	불음도선착장 - 불음도선착장
14코스	고려궁 성곽길	11.0km	4시간	남문 - 동문

공 고

강화군 공고 제2026-1069호

##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제한)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6년 7월 8일

강 화 군 수

### 1. 행정예고 내용

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갑룡초등학교 등 14개소 주변 통학로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신규 설치하여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2. 설치목적

- 가. 어린이 등하굣길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사전 방지
- 나. 아동보호구역 내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
- 다.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
- 라. 학부모 및 주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

3. 설치 장소

- 가. 갑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나. 강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다. 합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라. 선원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마. 불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바. 하점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사. 조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아. 내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자. 교동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차. 삼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카. 길상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타. 대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파. 삼성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하. 명신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- 거. 해명초등학교 주변 통학로

4. 설치 대수

개소별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3대 이상(회전형 1대, 고정형 2대 이상)

5. 촬영 범위 및 시간

- 가. 촬영범위 : 통학로, 학교 주변 보행로, 주요 진출입로 등
- 나.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- 다. 통합관제센터 연계: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·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

6. 관리부서

강화군청 가족복지과

7. 의견 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,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)
- 다. 주소 및 연락처

8. 제출기간

2026년 7월 8일 ~ 2026년 7월 28일 (20일간)

9. 제출처

우편번호 : (23031)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

부 서 명 : 강화군청 가족복지과

전화번호 : 032-933-1391

팩스번호 : 032-930-3838

전자우편 : polar@korea.kr

10. 기타사항

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 끝.

강화군 공고 제2026-1076호

##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(안) 재공고·열람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결정 및 결정(변경)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강화군청(도시개발과, ☎032-930-3807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6. 7. 8.

강 화 군 수

1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결정 및 결정(변경)(안) 주요내용
  - 위치 : 강화읍(국화리, 남산리, 옥림리), 길상면(선두리, 온수리), 내가면(고천리), 선원면(냉정리 일원)
  - 결정 및 결정(변경) 내용: 주민의견서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
    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지구명	위 치	제한내용	면적(㎡)	비 고
신규	국화5지구	강화읍 국화리 498 일원	건폐율 50%	89,220	
신규	남산4지구	강화읍 남산리 292 일원	건폐율 50%	187,260	
신규	남산5지구	강화읍 남산리 450 일원	건폐율 50%	179,098	
신규	옥림1지구	강화읍 옥림리 산 118-1 일원	건폐율 50%	43,445	
신규	옥림2지구	강화읍 옥림리 1041-2 일원	건폐율 50%	31,296	
신규	선두1지구	길상면 선두리 416-7 일원	건폐율 50%	80,148	
신규	온수2지구	길상면 온수리 산58-2 일원	건폐율 50%	123,277	
신규	고천1지구	내가면 고천리 1116 일원	건폐율 50%	199,687	
신규	고천2지구	내가면 고천리 1256-5 일원	건폐율 50%	65,353	
신규	선행1지구	선원면 선행리 67-39 일원	건폐율 50%	107,657	
변경	남산3지구	강화읍 남산리 535-1 일원	건폐율 50%	167,719 → 195,008 (증27,289)	최초 고시 강화군2020-1

※ 강화군고시 제2025-1186호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: 남산3지구 167,719㎡⇒195,008㎡

## 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사유서

지구명	내 용	결정(변경) 사유
국화5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및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
남산4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및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
남산5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및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
옥림1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및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
옥림2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및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
선두1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및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
온수2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 및 용도지역 불일치 정정 예정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및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
고천1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 및 용도지역 불일치 정정 예정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및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
고천2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 및 용도지역 불일치 정정 예정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및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
선행1지구	자연취락지구 지정(신규)	·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·체계적 정비 및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
남산3지구	자연취락지구 변경 [면적) 증, 27,289㎡]	· 기존 자연취락지구 연접한 동일 생활권 내 지역에 대한 합리적·체계적 도시관리 도모

## 2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의견 제출 : 도시관리계획(안)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## 3. 열람 장소

- 강화군청 도시개발과(032-930-3807, 강화읍 강화대로 394)
- 강화읍사무소(032-930-4209, 강화읍 강화대로440번길 10)
- 길상면사무소(032-930-4432, 길상면 마니산로 21)
- 내가면사무소(032-930-4269, 내가면 강화서로 249)
- 선원면사무소(032-930-4216, 선원면 대문고개로 22)

## 4. 관계 도서 : 게재 생략

강화군 공고 제2026-1083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지적재조사 업무 규정」 제15조에 따라 강화군 국화1·2·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[임시]경계점표지 측량 일정 및 참관 요청을 위해 안내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: 불임 공시송달 조서 참조

2. 공고기간: 2026. 7. 9. ~ 2026. 7. 23.[15일간]

3. 공고장소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
4. 기타사항

가.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,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(☎032-930-3256, 325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공시송달 조서 1부.

2026. 7. 9.

인천광역시 강화군수

# 국화1지구 공시송달 조서

순번	성명	토지소재지	우편번호	주소	배달결과
1	박*선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55-2 외 1필지	14596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***, ****동 ***호	반송불능 (기타)
2	박*숙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35 외 1필지	23033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***,	반송불능 (기타)
3	신*섭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55-3 외 2필지	31019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*로 ***-**, ***동 ****호	반송불능 (기타)
4	박*정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35 외 1필지	24046	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*	반송불능 (수취인불명)
5	전*원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08-4	23028	인천광역시 강화읍 국화리 산*	반송불능 (주소불명)
6	한*석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07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***,	반송불능 (수취인불명)
7	김*순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38-6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****-	반송불능 (기타)
8	이*열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35 외 1필지	22219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***, **동 ****호	반송불능 (기타)
9	정*현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38-7 외 1필지	17751	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****-	반송불능 (기타)
10	김*옥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26-2	10089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*로 **, **동 ****호	반송불능 (폐문부재)
11	김*화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92-3	07606	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**길 **, **동 ***호	반송불능 (수취인불명)
12	정*길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07-5 외 1필지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****-	반송불능 (기타)
13	나*주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04-3 외 6필지	14721	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**변길 **, **동 ***호	반송불능 (기타)
14	박*은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35 외 1필지	12809	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****-	반송불능 (수취인불명)
15	박*현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35 외 1필지	03365	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*길 *, **동 ***호	반송불능 (폐문부재)
16	박*신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35 외 1필지	21503	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***, *동 ****호	반송불능 (기타)
17	이*현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07-2 외 1필지	23029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*길**변길 *	반송불능 (기타)
18	이*남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35 외 1필지	21562	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***, ****동 ****호	반송불능 (수취인불명)
19	이*화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35 외 1필지	10118	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**, **동 ***호	반송불능 (폐문부재)
20	이*준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07-3	23020	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홍의길**변길 ***-	반송불능 (기타)
21	이*정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35 외 1필지	21414	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**변길 **	반송불능 (기타)
22	이*익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55-10	14589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***변길 ***-, ***호	반송불능 (기타)
23	장*철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90 외 1필지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****-	반송불능 (기타)
24	전*희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18-2 외 1필지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****-	반송불능 (기타)
25	최*준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49	21606	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***, **동 ****호	반송불능 (기타)
26	한*희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56-1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***변길 **	반송불능 (기타)
27	홍*숙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55-2 외 1필지	14596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***, ****동 ***호	반송불능 (기타)
28	김*영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55-9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***,	반송불능 (기타)
29	박*호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35	12441	경기도 가평군 상면 탐상골길 **	반송불능

		외 1필지			[수취인불명]
30	방*열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10 외 1필지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***~*	반송불능 (기타)
31	방*근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11-2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***	반송불능 (기타)
32	이*춘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12	10025	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교양로 **	반송불능 (폐훈부채)
33	정*철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38-8	23025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***번길 ***~*, *~***	반송불능 (기타)
34	최*자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23-3 외 3필지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***	반송불능 (기타)
35	한*훈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06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***	반송불능 (기타)
36	한*정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04-3 외 3필지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***~**	반송불능 (기타)

## 국화2지구 공시송달 조서

순번	성명	토지소재지	우편번호	주소	배달결과
1	권*훈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94-1 외 3필지	03626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8길 **, ***동 ****호	반송불능(기타)
2	김*자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22-2 외 1필지	21545	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***번길 **	반송불능(주소불명)
3	김*혜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61-5	10068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*로 ***-**, ***동 ****호	반송불능(폐문부재)
4	김*우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35-7 외 1필지	22736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리임로 **, ***동 ****호	반송불능(기타)
5	남*역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22-1 외 2필지	23040	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***, ***동 ****호	반송불능(기타)
6	문*욱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35-1 외 1필지	23040	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***-**, ***동 ****호	반송불능(기타)
7	서*하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80-1	21996	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*번길 **, ***동 ****호	반송불능(기타)
8	오*현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21 외 2필지	22810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***, ***동 ****호	반송불능(기타)
9	이*선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80-2	01791	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**, ***동 ****호	반송불능(기타)
10	임*석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22-4	10080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*로**번길 ***-**	반송불능(주소불명)
11	정*환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77 외 5필지	23021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***번길 ***-**	반송불능(기타)
12	조*숙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22-2 외 1필지	14287	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***, ***동 ***호	반송불능(기타)
13	주식회사 블*아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94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시리미로***번길 **	반송불능(기타)
14	주식회사 에***이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82-3	10003	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정로 ***-**	반송불능(이사불명)
15	최*삼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22-2 외 1필지	03344	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**가길 **	반송불능(폐문부재)

# 국화3지구 공시송달 조서

순번	성명	토지소재지	우편번호	주소	배달결과
1	김*예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40-1	06930	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**가길 ***	반송불 능(기타)
2	김*란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 225-2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시리미로*** 번길 **	반송불 능(기타)
3	김*후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38	21387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***, **동 ****호	반송불 능(기타)
4	김*중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40-1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시리미로*** 번길 **, ***호	반송불 능(기타)
5	박*서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93-21 외 2필지	23020	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*** 번길 *	반송불 능(기타)
6	박*은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40-1	07739	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**다길 **-, ***호	반송불 능(기타)
7	이*택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04	23028	,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***	반송불 능(주소 불명)
8	이*숙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35-2 외 1필지	23037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부조고개길 **	반송불 능(기타)
9	고*순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93-36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시리미로*** 번길 ***	반송불 능(기타)
10	김*중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93-21 외 2필지	10449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***-**, ***동 ***호	반송불 능(주소 인불명)
11	방*경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93-9 외 2필지	21387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***, **동 ****호	반송불 능(기타)
12	이*주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93-21 외 1필지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시리미로*** 번길 **-	반송불 능(기타)
13	한*미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93-21 외 1필지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시리미로*** 번길 ***	반송불 능(기타)
14	이*찬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97-4	22858	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*로 **, ***동 ***호	반송불 능(기타)
15	한*훈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97-3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***	반송불 능(기타)
16	김*풍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55-14 외 1필지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시리미로*** 번길 **	반송불 능(기타)
17	방*열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27 외 5필지	23028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****호	반송불 능(기타)
18	이*정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97-9 외 7필지	23025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*** 번길 ***-, ***호	반송불 능(기타)
19	이*현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97-4	22858	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*로 **, ***동 ***호	반송불 능(기타)
20	장*연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32-1 외 1필지	23029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*길**번 길 **	반송불 능(기타)
21	함*표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55-10 외 1필지	14994	경기도 시흥시 목실길 **	반송불 능(주소 불명)